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방향

---대한불교 조계종을 중심으로---

전 해 주

(동국대학교)

《요약》

이 논문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비구니 승가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교단내 비구니의 위상정립과 교단의 나아갈 방향을 조명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먼저 비구니 승가의 현황을, 비구니의 수행과 교육 그리고 종헌종법상 명시되어 있는 비구니의 지위를 통해서 살핀다. 다음으로 비구니 승가가 처해 있는 차별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석존의 평등사상에 입각하여 소승계율과 대승정신의 조화를 도모해야 함을 밝히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혁과 보완책을 제시하려고 했다. 끝으로 비구니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과 그러기 위해서 비구니의 자각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I. 머리말

불교의 최우선 과제는 무상(無常)함에 따른 인간고(人間苦)의 해결이라 할 것이다. 그 고(苦)의 해결은 모든 존재가 연기된 것임을 분명히 아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모든 연기된 존재는 고정불변된 자성이 없다. 우리의 고(苦)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는 무상한 존재임을 모르는 미혹으로부터 생기고 증장된다. 석존은 십이연기의 순·역관에 의해 중생의 가장 근본적인 고통인 생사고를 탈각하고 열반을 증득하시어 중생들도 고통으로부터 해탈케 해 주셨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부처님의 반열반후 중생업이 달라지고 시대와 장소가 바뀔에 따라 불교 정신은 방편을 달리하여 이어져 왔다. 한국불교 역시 이 땅에 불교가 전래되어 공인된지 1,600여년 동안 비록 수난이 없지는 않았으나 교화중생의 염원은 계속되었다. 그러기위해 우선 교단자체내 바람직하지 못한 공업(共業)의 정화와 결사 및 개혁의 움직임도 끊이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교단은 본연의 자리로 되돌아가곤 하였다.

최근에도 다시 개혁의 바람이 불었으나¹⁾ 대중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도출되었다. 지난해인 불기 2542년도 한국불교사에 있어 빠지지 못할 대사건의 한 해였다고 여겨진다. 조계종의 제29대 총무원장 선출과 관련된 분규사태가 발생한 것이다.²⁾ 그 사태는 과격한 폭력으로 번졌고 분규사태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 소식이 퍼져나갔다.³⁾ 한국 승려들의 위상이 실추되고 대중들의 불교에 대한 향심이 크게 꺾이는 대사건이었다. 불교계에서 지난 10년간 포교한 것과 맞바꾸었다느니, 한국불교가 50년은 후퇴되었느니 하는 염려로 가득하였다. 이제는(불기 2543년 1월) 사건의 가닥이 거의 잡히기는 했으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하고 불씨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그러한 조계종 사태에 대한 진단과 향후 종단이 나아갈 방안으로서 출가 비구승 중심의 종단 운영으로 인해 파생되는 폐단이 지적되고 사부대중의 동참이 역설되었으니 그 일환으로 비구니의 역할론이 다시 대두되었다.⁴⁾ 교단내 비구니의 위상 문제는 그동안 계속 거론이 되어왔던 문제였던 것이다.⁵⁾ 이에 앞으로 나아갈 교단

1) 1994년 4월 10일 전국승려대회(조계사, 3000여명 참여)로 인해 조계종 개혁회의가 발족되어 개혁이 단행되었다. 전국승려대회는 당시 서 총무원장의 3선강행과 당선이 그 원인이 되었고, 13일 서 총무원장의 사퇴가 발표되었다. 당시 개혁회의의 일지는 “종단개혁불사백서”,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 pp.68-80이 참조된다.

2) 당시의 조계종 사태 일지에 대해서는 “불기 2542년 조계종 사태 자료집 1”, (불기 2543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pp.7-13 이 참조된다. 동 자료집 1과 2 그리고 “정화개혁회의의 실체 1” “정화개혁회의의 실체 2”, (불기 2543년 1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등을 통하여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3) 교계외의 신문 잡지 등에 보도된 분규사태에 대한 기사는 “불기 2542년 조계종 사태자료집 2”, 부록편, pp. 519-747에 스크랩 되어 있다.

4) 주간불교 1999년 1월 5일자, 3면. 주간조선 1998년 12월 17일 뉴스레이드 등. 사태수습에 있어서도 2000대중이 참여한 범불교도대회를 여는 등, 종단 안정과 개혁을 위한 범불교연대회의(범불연)의 역할이 컸다.

5) 1994년 종단개혁당시에 개혁회의가 대중의 공의에 입각한 개혁불사를 추진하고자 개설한

의 향방을 조명해보기 위한 전(前) 단계로서 한국비구니 승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II. 한국 비구니 승가의 현황

1. 비구니의 수행과 교육

현재 조계종의 출가대중은 약 12,000명이며 그중 절반가량이 비구니이다.⁶⁾ 비구니는 비구와 마찬가지로 선원에서 수행정진하거나 교학을 연구하는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교육자와 피교육자로 정진하고 있으며, 가람수호도 하고 종단행정에 참여하며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고도 있다.

그중 선원과 승가대학 등에서 정진하고 있는 비구와 비구니 대중의 지난해(불기 2542년, 무인년, 1998) 현황을 숫자로 제시해 보기로하자. 무인년 하안거때 전국 선원에서 정진한 대중에 대하여 전국선원수좌회에서 파악한 대중명단(全國禪院 首者會, 佛紀 2,542년)에 의하면 전국 69선원의 총대중수는 1,416명이다. 그중 총림이 5개, 비구선원이 32개, 비구니선원 32개소이다. 안거 정진한 대중은 총림에서 133명, 비구선원에서 567명, 비구니 선원에서 716명이다.

기본교육기관(지방승가대학·중앙승가대학교·동국대학교·기초선원)에서 수학하고 있는 학인수는 비구 209명, 비구니 408명, 사미 625명, 사미니 482명이다. 즉 비구와 사미를 합해서 834명, 비구니와 사미니는 890명으로서 도합 1,107명이다.

기초교육에 참석한 제14기(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8: 5-27)의 행자수는 남행자 98명, 여행자 78명으로서 총 176명이다. 97년도(12기, 13기)는 남행자가 194명(104, 90)이고 여행자가 183명(85, 98)으로서 도합 377명이다. 이외에 전문 교육기관

‘열린마당’의 여론수렴에서도 비구니스님의 종단에서의 위상정립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 (종단개혁불사백서, p.11) 비구니들 스스로도 비구니 정체도량을 결성하여 비구니 위상정립을 위한 시도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6) 1999년 1월 현재의 조계종 승려수는 사미 2,168명, 사미니 1,811명, 비구 4,077명, 비구니 3,917명으로서 사미와 비구가 6,245명, 사미니와 비구니가 5,728명, 도합 11,973명이다.

(대학원·율원·학림)에서 수학하거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비구·비구니들도 적지 않으며, 외국에서 불교학을 하는 이들도 있다(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8: 53-61). 또 전국 사찰(2,500여개)에서 비구니가 주지 등의 소임을 맡아 가람수호에 종사하기도 하고, 사회봉사활동(64개 복지기관)에 기여하거나 종단의 종무행정에도 비구니가 참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비구니회 등과 같은 조직을 갖고 체계적 활동을 전개하고도 있다.

2. 종헌종법상 비구니의 지위

이와 같이 한국 비구니는 성직자의 자격으로서 모든 분야의 수행과 활동을 비구와 같이 담당하고 있다. 사찰내 의식을 집행하는 일도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비구니 역할론이 이 심각한 상황속에서 다시 부각되는가? 그것은 비구니가 각 분야에서 수행과 교화에 참여하고 있기는 하되 비구에 비해 차등적이고 제한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다보니 다소 적극적이지 못하여 교단의 향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듣고도 있다.

비구니의 위상정립과 역할에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단내 특히 출가 이부중 내에 만연하고 있는 차별적 정서가 아닌가 한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우선 종헌종법에 나타나는 권리제한이나 차등적 조항들만 보더라도 차별은 완연하며 비구니 역할론이 대두될 법하다.

비구니의 위상정립을 위한 제안은 1994년에 종단개혁 바람이 불었을 때도 공론화 되었다. 그 당시 적극적으로 개혁에 참여한 비구니들은 정혜도량을 결성하고 전국비구니회와 창구를 일원화하여 비구니 의식개혁을 위한 시도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구니 위상 정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⁷⁾

그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구니들의 노력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종헌종

7) 토론회는 불기 2538년 5월 29일, 중앙승가대학 정진관에서 개최되었으며 2인의 발제자와 8인의 토론자가 함께하였다. 발제1은 지광스님의 “비구니의 의식개혁”, 발제2는 대우스님의 “교단내 비구니 위상”이었다.

법상의 비구니의 지위가 다소 상승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아직 크게 달라지지는 못하였다.

종단법령집(대한불교조계종 법령집, 1995)에 보이는 종헌⁸⁾의 제3장 제8조에 “본종(本宗)은 승려(비구·비구니)와 신도(우바새·우바이)로서 구성한다.” 제3장 제9조에 “승려는 구족계(具足戒)와 보살계(菩薩戒)를 수지(受持)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 라고하여 조계종의 승려는 비구·비구니로 구성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종헌과 종헌에 입각한 종법상에는 비구·비구니의 지위는 매우 차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헌에 명시되어 있는 각 자격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6장 종정(宗正)

제20조 종정은 아래의 자격을 구비하고 행해(行解)가 원만한 비구(比丘)이어야 한다.

1. 승납(僧臘) 45년 이상
2. 연령 65세 이상
3. 법계(法階) 대종사(大宗師)

제7장 원로회의(元老會議)

제26조 ①원로회의는 17인 이상 25인 이내의 승납 45년 연령 65세, 법계 대종사 급의 원로(元老) 비구(比丘)로 구성한다.

제8장 중앙종회(中央宗會)

제33조 중앙종회 의원의 자격은 승납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제9장 총무원(總務院)

제1절 총무원장

제53조 ①총무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 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8) 현 종헌은 불기 2538년(1994) 9월 27일에 개정, 9월 29일에 공포된 것으로서 불기 2506년(1962) 3월 22일 제정, 3월 25일 공포된 이후 21번 개정된 것이다.

종헌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前文과 부칙 그리고 보칙이 있다.

제10장 교육원(敎育院)

제1절 교육원장

제59조 ①교육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 급 이상의 학덕을 겸비한 비구로 한다.

제11장 포교원(布敎院)

제1절 포교원장

제67조 ①포교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 급 이상의 학덕을 겸비한 비구로 한다.

제12장 호계원(護戒院)

제73조 ③호계위원의 자격은 승납 25년, 연령 45세, 법계 3급 이상의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제74조 ②호계원장의 자격은 승납 30년, 연령 50세, 법계 종사 급 이상의 비구로 한다.

제13장 법규위원회(法規委員會)

제80조 ④법규위원의 자격은 승납 25년, 연령 45세, 법계 대덕 이상의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다.

제19장 수행(修行)

제1절 총림(叢林)

제105조 ②방장(方丈)은 선, 교, 율을 겸비한 승납 40년 이상의 본분 종사(本分宗師)라야 한다.

(*제14장에서 제18장까지는 선거관리, 위원회, 본사주지회의, 교구, 사찰 등에 관한 장이며 자격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제20장 이하 마지막 제24장까지도 자격요건과는 무관한 장이다.)

이상과 같이 중현에서 종단기구의 주요 교역직 종무원 이상의 자격은 거의 다 비구에 한정됨을 명시하고 있다.⁹⁾ 단지 중앙종회의 종회의원이 총 81명중 비구니가 10명인 것이다.¹⁰⁾ 지난 94년의 개혁회의에서 비구니 종회의원의 수를 10명으로 늘렸다. 그 비구니 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 대표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¹¹⁾에서 결정한다.¹²⁾ 비구 종회의원은 비구들에 의해서¹³⁾, 비구니 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해서

9) 이러한 중현에 입각하여 종법이 재정 또는 개정 되었고 각종 교역직 종무원의 자격도 언급되어 있다.

위 자격에서 언급된 법제는 현재 법제고시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나, 법제법(1976년 3월 2일 제정·공포)에 보이는 비구·비구니의 법제종별은 다음과 같다. 법제법 제2조 (의의, 책임) 제1항 법제는 수행력과 종단 지도력의 상징이며 종단 위계 서열의 기본이다. 제2항 모든 법제 품수자는 종단 책무와 사회교화를 감당할 책임을 갖는다. 제3조 3. 비구니 법제는 별정급이며 비구와의 서열은 울장 소정에 의한다. 제5조 (종별) 법제는 다음 종별로 한다.

1. 비구법제

1급: 대종사, 2급: 종사, 3급1: 종덕 3급2: 대덕, 4급: 중덕 5급: 견덕 2. 비구니 법제
1급: 명사, 2급: 명덕, 3급1: 현덕, 3급2: 혜덕, 4급: 정덕, 5급: 계덕

10) 중앙종회의원선거법 (1998년 9월 8일 개정, 1998년 9월 16일 공포)

제2장 중앙종회 의원 선거

제2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제13조 (정수) 중앙종회의원의 정수는 81인(비구니 10인을 포함)으로 하며, 교구 및 직능별 의원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11)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 (선출 및 구성)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9인의 위원(비구니 1인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7조 (자격)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승랍 20년 이상, 연령 40세 이상의 승려로 한다.

12) 중앙종회의원선거법(1998년 9월 8일 개정, 1998년 9월 16일 공포)

제2장 중앙종회 의원 선거

제8절 비구니 중앙종회의원 선출

제31조 (선출)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전국비구니 대표단체(전국비구니회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직능대표선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3) 중앙종회의원선거법(1998년 9월 8일 개정, 1998년 9월 16일 공포)

제2장 중앙종회 의원 선거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선거권)제1항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로서 교구본사 재직승, 재직승(본말사주지, 본사 부주지, 본사국장), 당해 교구에 1년 이상 거주승(주민등록상 거주자)은 당해 교구의 중앙종회 의원 선거권이 있다.

선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비구니들은 선거권이 없으며 소속 교구의 전체회의인 산중총회에 참석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산중총회법¹⁴⁾ 개정안에는 산중총회의 구성원으로서 본사 산내암자 감원인 비구 비구니(제4조 제1항)와 비구니계를 수지한지 20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제5항), 그리고 총림인 경우 수좌, 율주, 유나, 강주, 본사원주의 소임을 맡고 있는 자를 더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5항의 비구니 참가문제는 본회에서 거센 반발로 인해 2년 이상 그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였다. 그 주요 이유가 비구니계를 수지한지 20년이 경과한 비구니라 할지라도 교구의 재적 비구니가 산중총회에 참여하게 되면 산중총회에서 추천되는 본사주지¹⁵⁾가 비구니에 의해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본사주지에 비구니가 추천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팽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후 산중총회법이 안고 있는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본사주지 직선제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1998년 8월 26일). 그러나 본사주지 직선제를 둘러싼 찬반양론 역시 팽팽하였다. 당시 논란되었던 내용은 ‘산중총회법 관련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직선제”에 대한 공청회 속기록’, (중앙종회 사무처, 1998)이 참조된다. 그리하여 산중총회법의 개정안은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제9조(피선거권)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은 중앙종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 14) 산중총회는 교구본사가 소재하는 산중의 총의를 결집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산중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를 말한다. 이 산중총회가 관장하는 사항으로는 총무원장에게 추천할 교구본사 주지후보의 선출(총림 제외)과 중앙종회에 추천할 방장 후보자의 선출 등이다(산중총회법 제3조).

현 산중총회법(1995년 11월 7일 개정, 1995년 12월 4일 공포)에서는 제4조(구성원)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승려가 산중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1.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을 경과한 당해 교구의 재적승
2. 임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교구본사 국장급 이상의 총무원인 비구
3. 교구 관할 말사 주지인 비구 비구니
4. 비구계를 수지한지 5년을 경과한 자로서 주민등록상 2년 이상 당해 교구 본사에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거주자임을 확인한 자)

- 15) 지방종정법(1995년 11월 17일 개정, 1995년 12월 4일 공포)

제2장 교구본사

제1절 본사주지

제8조(본사주지) ②본사의 주지는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승랍 25년 이상, 연령 45세 이상 70세 이하, 법계3급 이상의 승려중에서 본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하며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상태이다. 산중총회법이 앞으로 어떻게 개정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는 비구니의 종단내 위상과 관련되는 매우 주목되는 사안이라 하겠다.

이외에 종법에서 비구니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는 종무행정 각부서에 비구니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장급 이하 비구니종무원을 둘 수 있다는 것¹⁶⁾과 비구니계단에서 식차마나니에게 예비 수계하는 삼사칠증을 모실 수 있다는 조항¹⁷⁾이다. 물론 비구·비구니를 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조항에 비구니가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각교구총회에서 선출하는 10인으로 구성되는 총무원장 선거인단¹⁸⁾에 비구니가 들어가서 10명의 비구니 종회의원과 함께 총무원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 또 말사 주지나 본말사 암자 감원인 비구니는 직선직 교구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¹⁹⁾ 그러나 이상을 다 감안하더라도 전체 비구니의 참정권이나 교단내 비구니의 지위는 거의 보장받지 못하는 미미한 실정이다.

근래에 비구니들의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두드러지면서 그러한 종헌종법에 명시된 법안의 수정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출가승단 구성원간의 갈등과 마찰은 오히려 해마다 증폭되어져 온 것 같다. 그것은 최근에 수계현장에서 비구니들이 비구니 계율을 강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교우회(전국비구니 교·강사 모임) 회원 16명 전원을 율사회의에서 징계하기로 결의한 데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하겠다.

16) 총무원법, 제4장 종무행정 각부서, 제22조(호법부 종무원 임명 및 임용)

17) 계단법 제3장 계단

제10조 2항 비구니 계단은 여법비구니, 삼사칠증(또는 삼사이증)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식차마나니에게 예비 수계케하고 다음에 당일로 이부 대승중 본소계단에서 본 수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8) 총무원장 선거법(1998년 9월 8일 개정, 9월 16일 공포)

제2장 총무원장 선거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 (선거권) 재임중인 중앙종회의원과 각교구총회에서 선출하는 10인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에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19) 교구종회의원 선거법(1998, 9, 8 개정)

제2장 교구종회의원 선거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8조 (선거권)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서 교구본사 재직승(비구), 재직승(본말사 주지, 본사국장, 본말사 암자 감원), 당해 교구의 1년 이상 거주승(비구로서 주민등록상 거주자)은 직선직 교구종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Ⅲ. 비구니승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소승계율과 대승정신

부처님의 보리수하에서의 깨달음은 그 당시 많은 사람이 부딪히고 고민해왔던 사성계급 차별에 따른 모순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도 가시화되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중성이 결정되어 있다’고 전제하여 바라문교에서 정한 사성계급 제도에 따라야 하는 수많은 고통받는 이들을,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정신으로 구체해주셨다. ‘사람이 귀하고 천한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에 달렸다’고 하는 업설을 펴신 것이다.(석지현 옮김, 1993: 41-42) 그것은 남녀문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부처님께서는 당시의 계급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부처님 제자로 받아들여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셨던 것이다.

그러한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다시금 되살려 일어난 불교가 대승불교이다.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을 성품이 있으며[一切衆生悉有佛性], 모두 다 함께 성불하자[一切衆生皆共成佛道]는 평등정신을 천명하고 자리이타의 가치를 내세워 대승운동을 전개시켜 나간 것이다. 대승불교의 사상이 담긴 대승경전은 한국불교의 소의경전이 되어왔다. 전문강원을 이은 지방승가대학에서 이수하는 주요 이력 과목을 보면, 사미과에서는 치문경훈·사미율의, 사집과에서는 서장·도서·선요·절요, 사교과에서는 능엄경·기신론·금강경·원각경, 대교과에서는 화엄경 등이다. 그리고 수의과에서 법화경이나 선문염송 등을 공부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이력 과목의 배정은 17세기 중엽부터 보이고 있다(전해주, 1997A: 235-238). 여기서 전문강원 즉 지방승가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전류는 능엄경·금강경·원각경·화엄경·법화경인데 이 경전들은 모두 대승경전임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불교 정신은 바로 대승불교정신인 것이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정규코스인 대교과에서 배우는 경전이 화엄경인 것은 한국불교에 있어서 으뜸가는 경전을 화엄경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평등세계를 보살행을 통해서 잘 드러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남녀 평등의 모습은 선재의 선지식을 통해서

적실히 보여주고 있다.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보살행을 추구하는 선재의 54분의 선 지식중 21분이 여성선지식인 것이다(전해주, 1997B, 입법계품의 여성선지식에 대한 고찰: 323-358).

대승경전의 전래는 한국불교의 전래와 그 때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화엄경의 전래는 그 하한선을 자장율사로 잡을 수 있다.(해주, 1998A: 257) 수용기의 불교가 대승경전에 의거된 것임은 삼국시대 불교의 특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고구려불교는 삼론, 백제불교는 계율, 신라불교는 유식, 통일신라 불교는 화엄인 것은 당시의 불교상황을 볼 때 추정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그후 화엄은 한국불교의 최고봉을 유지해왔다. 한국선 역시 선과 화엄의 끊임없는 교섭속에서 그 특징이 이루어져 왔던 것이다.

한국불교의 비구니승가는 타국에 유례가 없는 특징적 모습임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국의 비구니 승가가 융성한 이유가 무엇인가? 필자는 그것이 대승 불교의 수용, 특히 한국불교내 위와 같은 화엄경의 위상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화엄경에 보이는 평등정신은 한국불교교단에서 비구승단과 나란히 비구니승가가 유지된 원동력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소승계율 역시 대승사상과 동시에 전래되고 수용되었다. 백제때 겸익에 의해 사분율이 전래되고 연구된 이래로 출가 이부중(二部衆)의 구족계는 사분율에 의해서 수계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의 계율관은 백제와는 좀 다른 색채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으니, 원광(圓光)의 보살계 인식과 세속오계(三國遺事4, 義解5, 圓光西學) 뿐만 아니라 자장(慈藏)의 계율관(삼국유사4, 慈藏定律)이나 원효의 무애행(삼국유사4, 元曉不羈) 그리고 지통의 수계설화(삼국유사5, 避隱8, 朗智承雲 普賢樹) 등이 바로 그 좋은 예라고 하겠다. 그 전통은 오늘날까지 숭상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지통이 대승보살이며 화엄보살인 보현보살에게서 수계 받았다는 설화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오늘날에도 조계종에서는 사분율에 의한 구족계와 보살계를 함께 수지하고 있다²⁰⁾. 사분율은 부파불교시대 상좌부 계통의 법장부에서 수지한 계율이다. 즉 소승 불교종에서도 보수적인 상좌부 계통의 계율인 것이다. 이 사분율은 비구와 비구니

20) 종헌 제3장 宗圖, 제9조 제1항 (종단법령집, p. 20). 종헌 제5장 戒壇 제16조(종단법령집 p.21).

의 차별이 계율조목화 되어 있는 비구니팔경계(比丘尼八敬戒)의 내용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계율이다.

사분율에서 설하고 있는 비구니팔경계[八盡形壽不加過法] (四分律比丘尼犍度, 大正藏 22: 923 上-中)와 구족계의 바라제목차(四分比丘尼戒本, 大正藏22: 1038上-中)를 대조해보면 다음과 같다(全海住, 1986: 323와 328-332).

(1)비록 백세비구니일지라도 새로 계를 받은 비구를 보면 마땅히 일어나서 맞이하고 예배하며 깨끗한 좌복을 펴서 앉기를 청하라.(비구니팔경계) -- 만약 비구니가 새로 수계한 비구를 보면 마땅히 일어나 영접하며 공경히 예배하고 문신(問訊)하며 앉기를 청해야 할 것이니,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일제니라(波逸提 제175 慢新比丘戒).

(2)비구니는 비구를 욕하거나 꾸짖지 말 것이며 파계(破戒)· 파견(破見)· 파위의(破威儀)라고 비방하지 말라.(비구니팔경계). (3)비구니는 비구의 죄를 드러내거나 기억시키거나 자백시키지 못하며 그들이 죄를 찾는 일이나 설계하는 일이나 자자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비구니는 비구를 꾸짖지 못하고 비구는 비구니를 꾸짖을 수 있다(비구니팔경계) -- 만약 비구니가 비구를 꾸짖으면 바일제니라(바일제 제145, 매매비구계).

(4)식차마나가 계를 배워 마치면 비구에게서 대계를 받아야 한다(비구니팔경계) -- 만약 비구니가 구족계를 받은 다음 일야(一夜)를 지나고 비구승중에 가서 인준을 받게되면 바일제니라(바일제 제139 授宿往僧戒).

(5) 비구니가 승잔죄를 범하면 마땅히 이부승중에서 보름동안 마나타를 행하여야 한다(비구니팔경계) -- 해당 계목이 없음.

(6)비구니는 보름동안 비구에게 교수해 주기를 청해야 한다(비구니팔경계) -- 만약 비구니가 환자가 아니면서 청법하러 가지 아니하면 바일제니라(바일제 제140, 無病違教戒): 만일 비구니로서 반월(半月)마다 마땅히 비구승중에 가서 교수(教授)를 청해야 할 것이어늘, 청하지 아니하면 바일제니라(제141 半月違教戒).

(7)비구니는 비구가 없는 곳에서는 하안거를 하지 말라(비구니팔경계) --만약 비구니가 비구승이 없는 곳에서 하안거를 하면 바일제니라(바일제 제143 無僧安居戒).

(8)비구니승이 안거를 마치면 마땅히 비구중에서 삼사(三事)를 구해야 할 것이니, 즉 보고 듣고 의심한 것에 대하여 자자하여야 한다(비구니팔경계) -- 만약 비구니가 하안거를 마치고 비구승중에 가서 숨김없이 견(見)·문(聞)·의(疑)인 삼사를 고백하여야 할 것이거늘, 만약 가지 않으면 바일제니라 (바일제 제142 夏竟違忤戒).

이상의 팔경계와 그에 해당하는 내용은 교단내 비구니의 차별적 위상을 초래케 한 주요원인이 됨은 명백하다고 하겠다. 여기서 비구니승가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팔경계에 대한 재인식이 절실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필자는 이 팔경계가 석가모니 부처님 재세시에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로 보기엔 무리가 많으며, 팔경계는 아마도 부파불교 말기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고찰한 바 있다(전해주, 1986: 326-340) 그것은 시대적 산물이지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 점은 곧 바로 흥기된 대승불교에 의해서, 소승은 부처님의 근본정신에 어긋난 것이라고 비판받게 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팔경계가 비구니에게 다시금 강조되기 시작하여 많은 시비가 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대승정신과 상치되기 때문이다. 팔경계와 대승정신의 상충은 소승계율과 대승정신의 상충이라 할 수 있다. 바꾸어말하면 그것은 비구와 비구니의 문제만이 아니다. 비구 비구니를 떠나서 소승계율과 대승정신을 함께 수지하고 받들어야 하는 한국불교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한국불교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소승율사이면서 과연 동시에 대승보살이 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점이 해결되면 비구·비구니 문제는 저절로 풀리게 된다고 하겠다. 팔경계도 사분율의 일부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과거에 이 문제로 고민한 적이 있었던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신라시대에 이미 대승보살계를 설해놓은 범망경을 받아들이고 보살계본을 강설하며 주석하는 과정에서 소승계와 대승계의 관계설정과 조화를 모색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崔源植, 1996: 163-188).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청규의 제정에서 발견할 수 있다. 중국에서 청규는 선종에서 제정하였다. 선사들은 처음 계율 사찰에

함께 거주하다가 후에 독립하게 된다. 선종 역시 대승불교의 한 부류에 속한다. 그래서 선종의 선사들은 사찰내에서 함께 지켜야 할 규칙을 제정하였으니 그것이 청규이다. 우리 교단에서도 청규를 받아들이고 제정하여 지켜왔음을 볼 수 있다. 조선 인조 14년(1636)에 나암진일(懶庵眞一)이 지은 석문가례초(釋門家禮抄)에 백장화상청규법(百丈和尚淸規法)이 부기되어 있으며(韓國佛教全書 8: 288下-289中) 거기에 선원생활에 있어 주요한 벌칙 28조항이 있음을 보아 조선시대에 백장청규가 지켜졌음을 알 수 있다(全海住, 1998B: 98). 고려시대 보조국사 지눌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韓國佛教全書 4 : 738上-739上) 역시 정혜결사의 도량에서 대중들이 지켜야 할 계율 덕목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계초심학인문에 보면 초심학인은 오계 십계 등을 지키고 범하고 열고 닫을 줄 알아야 한다고 당부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 형식상 계율을 범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도 계율을 수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구족계를 받으면서도 청규에 의해 대중생활을 영위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바로 계율의 시대적·대승적 재해석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계율을 불요의가 아니라 요의로 수지한 것이다.

그러면 구족계의 대승적 재해석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필자는 그 시원을 부처님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시자였던 아난 존자에게 유촉한 말씀에 의해서이다. 열반에 드시면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계를 의지하고 살도록 유촉하시면서 단지 “소소계는 버려도 좋다”는 허락을 내리신 것이다(長阿含經2, 遊行經, 大正藏1: 26上). 소소계(小小戒)는 잡쇄계(雜碎戒)라고도 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후 결집을 주도한 가섭은 소소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이유로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은 단 한 조목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계율을 결집하였으니(四分律, 大正藏22: 967中) 그것이 율장의 원형이 된 것이다.

이처럼 시대와 장소가 변함에 따라 그 시대를 살았던 대중들에 의해 계율은 계율조목에 집착하기도 하고, 계율을 제정하신 부처님의 근본정신을 살려 계율을 지니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교단사적 이해와 계율정신의 통찰이 없으면 혼란을 일으킬 여지도 있으며,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신 근본 뜻이 반

영되지 못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조계종은 불교정화 이후 1960년대부터 청규에 이어 다시 종헌종법을 제정하여 교단의 질서를 유지해왔다. 따라서 구족계와 대승보살계 그리고 청규와 더불어 종헌종법에 명시된 규율 등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모두 부처님의 근본정신에 부합되는지 점검하고 조화되도록 하는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2. 제도의 개혁과 보완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부처님의 근본 정신에 입각한 비구와 비구니의 평등성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보다 수월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현재로서는 우선 종헌종법의 제·개정이 필요함은 이미 살펴본 차별적 조항에서 드러난다고 하겠다. 그리고 종헌 종법에 의한 구체적인 제도의 보완이 요구된다. 그것은 종도들의 뜻을 모아 지속적인 변혁이 이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 동안 비구니들과 총무원장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정리해서 우선 몇가지 시안을 제시해보기로 한다.

첫째, 비구니도 비구와 동등한 법계를 품수받아야 할 것이다. 바꾸어말하면 비구니도 법력이 있으면 교단내 최고직에 올라갈 수 있으며 모든 행정직에도 종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역할을 맡을 수 없는 것과 역할을 맡지 않는 것은 분명 다르다.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가 비구와 똑같이 아라한과를 증득하였으며, 대승불교 역시 누구나 성불할 수 있다는 정신에서 출발하였다. 비구니의 자긍심을 복돋워 주는 것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비구니원을 따로 두거나 총무원내에 비구니부를 두는 안이다. 기본적으로는 현재 전국비구니회가 맡아해오고 있는 비구니 행정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전국비구니회를 비구니부나 비구니원으로 제도화시키자는 것이다. 현재 선거법에 의하면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전국비구니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전국비구니회의 성격이 종단행정의 공식기구가 아니라는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비구니 총림을 세우고 비구니 본사를 두는 안이다. 그것은 비구니의 수행

과 교육 그리고 포교에 있어서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비구니 본사는 반드시 기존 본사를 양도받을 필요는 없으며, 현 25교구 본사와 제26 또는 제27 교구본사가 지정되면 간단할 것이다. 총림도 마찬가지이다. 이외에 제기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점은 위의 제안에 자연히 수반되는 문제가 될 것이다.

3. 비구니의 역할 확대

위에서 제시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비구니들의 자각과 적극적인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더욱 확산시키자는 것이다. 수행과 교육 그리고 포교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이고, 비구니 자신들의 불제자로서의 위상을 점진하는데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비구니의 위상정립은 불교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 결코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비구니에게 참정권이 주어지면 교단이 더 어지러워진다는 교단내 우려가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우려가 행여 틀리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비구니 스스로의 반성과 자체 내의 비판이 없으면 안될 것이다. 스스로의 위상정립을 위한 자각에 수반되는 교육 또한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다. 부처님의 근본 정신이 이 땅에 자리하도록 교단 내외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데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더 한층 요구되는 시점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 한국불교교단내 비구니 승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조계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필자가 의도하는 바는 불제자가 부처님의 참뜻을 잘 받들어 길이 전하고자 하는데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본고의 불충분하고 미비한 점이 보충되어지길 기대한다. 불타의 해명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모두 다함께 행복한 불국토가 더욱 장엄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참고문헌〉

長阿含經2, 遊行經, 大正藏1.

四分律, 大正藏22.

四分律比丘尼犍度, 大正藏, 22.

四分比丘尼戒本. 大正藏22.

三國遺事.

三國遺事.

知訥, 誠初心學人文, 韓國佛教全書4.

懶庵眞一(1636), 釋門家禮抄, 韓國佛教全書8.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1995). 대한불교조계종법령집.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1998), 승가교육, 2.

대한불교 조계종 개혁회의(불기 2538년), 종단개혁불사백서.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불기 2542년). 조계종 사태 자료집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불기 2542년). 조계종 사태 자료집2.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불기 2543년 1월). 정화개혁회의 실체1.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불기 2543년 1월). 정화개혁회의 실체 2.

全國禪院首座會(佛紀 2542년), 戊寅年 夏安居 全國禪院 精進大衆名單.

석지현 옮김(1993), 슛타니파타(Sutta-nipāta), 서울: 민족사.

全海住(1986). 比丘尼教團의 成立에 對한 考察 -比丘尼八敬戒를 中心으로-. 韓國佛敎學, 11. 서울: 韓國佛敎學會.

전해주(1997A). 선원제전집도서에 대한 고찰 1., 서울: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전해주(1997B). 입법계품의 여성선지식에 대한 고찰, 한국불교학, 23, 한국불교학회

해주(1998A). 화엄의 세계. 서울: 민족사.

全海住(1998B). 韓國佛敎 儀式文에 보이는 華嚴信仰과 思想. 宗教研究, 16. 서울: 韓國宗敎學會.

崔源植(1996). 新羅 菩薩戒思想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 佛敎史研究, 창간호. 서울:

中央僧伽大學校 佛教史學研究所.

주간불교 1999년 1월 5일자.

주간조선 1998년 12월 17일자.